

의안번호	제 170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266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7년 11 월 12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11월 12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(안 제2조)
-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·팀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(안 제2조)
-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(안 제3조)
-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·군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·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
2. 시·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·협조 사항

3. 기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협의회사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사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사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

제19조 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·도 관할 구역 안의 시·군 및 자치구의 시장·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·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제35조 (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.

③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·도(시·도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·국장급 공무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 2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·협조 사항
 3.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
 4.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